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해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1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변경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관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정하고,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결과 및 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석재 가공 부산물·폐기물의 재활용 대책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위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20. ~ 1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지정대상지역”을 “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필요성
 2. 지정 또는 변경 대상지역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적
합성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④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는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
용을 타당성조사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조사의 범
위·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①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
립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
3.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여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 또는 변경 대상지역의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2.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수립한 사업계획
3.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내용과 석재산업진흥지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관리의 기본방향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석재산업의 업종별 상호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석재산업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 환경피해 저감, 재해 예방 등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6.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석재산업 육성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
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
3. 육성계획의 개요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진흥지
구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 중 석재가공 부산물·폐기물의 재활용 대책에 대한 연구·개발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 산업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지정대상지역</u> 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석재산업 진흥 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 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u>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 외한다)·시·군·구(자치구 를 말한다) -----</u>
<u><신 설></u>	<u>제18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 지 정·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u>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 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법 제17 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 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필요성
2. 지정 또는 변경 대상지역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적합성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는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타당성조사 기관에

제19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필요성
2. 지정대상지역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의 적합성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대상지역에 대한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납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조사의 범위·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
3.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의 실시결과 보고서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대상지역의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 또는 변경 대상지역의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

3. 육성계획의 개요

⑤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관리의 기본방향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석재산업의 업종별 상호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석재산업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 환경피해 저감, 재해 예방 등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6.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석재산업 육성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성조사 결과

2.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수립한 사업계획

3.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내용과 석재산업진흥지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범위·기준·절차 및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관리의 기본방향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석재산업의 업종별 상호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석재산업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 환경피해 저감, 재해 예방 등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6.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석재산업 육성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

제21조(석재사업자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재사업자협회(이하 “석재사업자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석재사업자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

3. 육성계획의 개요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5.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출과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석재사업자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석재사업자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재사업자협회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 6. (생략)

7.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신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②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

	<u>림토석협회에 위탁한다.</u> <u>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재</u> <u>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u> <u>신청의 접수</u> <u>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u> <u>· 개발 업무 중 석재가공 부</u> <u>산물 · 폐기물의 재활용 대책</u> <u>에 대한 연구 · 개발</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193